



인사혁신처

주요 실수사례



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!

#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

#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



# 재산신고 개요 및 작성

## 1. 신고사항

- 등록기준일 현재 본인,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 (혼인한 딸, 외조부모, 외손자녀, 양부모, 양자녀, 며느리 등 제외)

## 2. 신고종류

- **【최초 신고】** 신규, 승진(비공개자→공개자)
- **【변동 신고】** 정기변동, 의무면제, 퇴직, 재등록, 재공개

## 3. 신고기간

-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(임용, 퇴직 등)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- ※ 정기변동 신고는 매년 12.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말까지

## 4. 신고방법

- 공직윤리시스템([www.peti.go.kr](http://www.peti.go.kr))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·제출 (온라인 신고)

## 5. 신고서 작성방법



※ **【재산신고】→【신고서 작성】** 또는  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으로 작성 시작

- ① 본인정보수정 : 소속, 직급, 연락처 등 신상정보 수정
- ② 친족정보수정 :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 정보 수정
- ③ 총괄표작성 : 등록기준일 현재, 토지·건물·예금·채권·채무 등 신고
- ④ 변동요약서 : 재산증가·감소 등 사유 기재(최초 재산신고 시에는 제외)
- ⑤ 공개목록작성 : 공개대상자인 경우 작성
- ⑥ 신고서 제출

# 사례 1. 고지거부 허가기간(3년) 종료에 따른 친족 재산 누락

- 고지거부 허가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오인하여 친족 재산 누락

## 해결방법

☞ 【친족관리-고지거부신청】에서 고지거부 허가 또는 재심사 신청

<input type="checkbox"/>	관계	친족명	주민등록번호	고지거부사유	기타사유
<input type="checkbox"/>	부	홍국영	450501-1230001	<input type="radio"/> 독립생계유지 <input type="radio"/> 타인부양 <input type="radio"/> 기타	
<input type="checkbox"/>	모	강미자	500501-2230001	<input type="radio"/> 독립생계유지 <input type="radio"/> 타인부양 <input type="radio"/> 기타	



홍길동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부모 명의 예금, 건물 등 재산 총 0억원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**‘징계 의결요청’** 됨

## 사례 2. 친족 소유의 부동산(토지, 건물) 누락

부동산정보열람  클릭

### • 회신된 부동산정보를 열람을 하지 않아 친족 소유의 부동산 누락

⇒ 토지정보는 '토지대장', 건물정보는 '지방세 과세정보'(6.1.기준)이므로 6.1일 이후 변동내역 확인 필요!

### 해결방법

☞ 총괄표작성 화면에서 **부동산정보열람**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및 친족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 후 신고

### 03 총괄표작성

**부동산정보열람**

금융정보열람

신고요령

FAQ

#### ① 유의사항

- ※ 금융정보 의무자 사전검증기간: 1.16.~1.21. (상이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)
- ※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제공: 1.16.~2.28. (부동산은 열람정보를 출력하여 직접 등록)
- ※ 금융정보 활용입력: 1.22.~2.28.

#### ② 작성방법

- ※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**2018년 12월 31일**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종전 신고항목을 선택하여 변동사항(증감, 상실, 변동없음 등)을 신고합니다.

- ① 표시가 있는 항목은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입니다.
- ※   클릭하면 신고항목 목록을 접기, 펴기 할 수 있습니다.



홍길동은 회신된 부동산정보를 열람하지 않아 부모가 신규 취득한 건물 및 토지 0건, 총 0억원의 재산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**'과태료 부과'** 조치됨

## 사례 3. 전세(임차)보증금 누락

-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(토지, 건물)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 누락

### 해결방법

☞ 총괄표 상 건물 항목에서 전세(임차)권을 선택하여 임차보증금을 신고  
(※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이른바 '반전세'의 경우에도 건물 항목에서 전세(임차)권으로 보증금을 신고해야 함)

★ 권리종류	<b>전세(임차)권</b>
★ 소재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위에 선택한 권리자 주소와 같음 (※ 정확한 주소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) 지번 <input type="text" value="135-080"/> 주소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<input type="text" value="일반"/> - <input type="text" value="1"/> - <input type="text" value="1"/> 번지



홍길동은 자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금 〇억원을 전세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**'징계 의결요청'** 됨

## 사례 4. 친족 소유의 자동차 누락

- 자동차가 등록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 및 친족 소유의 자동차 누락

### 해결방법

- ☞ (연도 중 취득한 경우)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
- ☞ (계속 보유 중이거나 상속·증여받은 경우)
  -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
  - ②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
  - ③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순으로 가액을 신고



# 사례 5. 금융정보 활용입력 미숙(예금, 유가증권, 채무)

금융정보활용입력  클릭

- 정보제공 동의자에게 제공되는 금융기관 회신자료 활용 미숙으로 재산을 잘못 신고  
⇒ 회신정보는 자동 입력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해야 함!

## 금융정보활용입력(예금·보험 등)

등록의무자 : 홍길동 / 소속 : 인사혁신처 / 등록기준일 : 2018. 12. 31. / 신고서종류 : 재산변동신고서 / 공개구분 : 비공개

○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표입니다.

계좌별 기준일자 가액을 확인하신 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다른 경우 적정 가액을 수정(입력) 할 수 있습니다.

\* 이전에 계좌번호 등을 잘못 신고한 계좌(빨간색으로 표시)는 현재가액을 '0'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이후부터 표시되지 않음.

1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 9건

관계	소유자	예탁기관	예금종류	계좌번호	종전가액 (천원)	현재가액 (천원)	증가액 (천원)	감소액 (천원)	비고
	본인	홍길동	국민은행	연금보험	457615-01-333333	2,500	2,500	0	
2	본인	홍길동	국민은행	연금보험	457615-01-333333 2	12,313	0	0	12,313 배액 ①
	본인	홍길동	국민은행	연금보험	457615-01-333333-2	12,313	0	0	12,313 계좌불입치 등 ②

3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(외국은행, 비회신기관 등)

\*가액을 직접 입력 바랍니다.

관계	소유자	예탁기관	예금종류	계좌번호	종전가액 (천원)	현재가액 (천원)	증가액 (천원)	감소액 (천원)	비고
3	본인	홍길동	Bank of Tokyo - Mi...	자유예탁금	352-0109-2008-03	2,230		0	2,230
	본인	홍길동	USB (Union Bank of ...)	정기적금	10425485788788	1,000		0	1,000

4 \*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 후, 적색 표시된 글씨를 아래의 칸에 직접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본인 이 실제 신고할 금융정보를 확인 하였으며, 잘못 신고로 인한 책임은 의무자에게 있음. 본인확인

## 해결방법

총괄표에서 **금융정보활용입력** 버튼을 클릭한 후 금융기관에서 회신 받은 자료와 이전에 신고한 자료를 비교한 표 확인

1 '현재가액' 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됨

2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는 이전 신고서에서 계좌번호나 금융기관을 잘못 입력한 계좌임

※ 각 계좌의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르거나 해약, 전량매도, 전액상환 계좌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표의 각 항목별 상세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음

3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(외국은행, 비회신 기관 등)는 '18.12.31일 실제 보유금액을 확인하여 '현재가액' 란에 직접 입력해야 함

4 금융정보 활용입력 내용의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'본인' 과 '확인' 을 직접 입력하고 본인확인 박스를 클릭해야 신고내용이 저장됨

## 사례 6. 사인 간 채권·채무 누락

### • 금융정보로 회신되지 않는 사인 간 채권 및 채무 누락

#### 해결방법

- ☞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신고하며 신규로 발생한 사인간 채권·채무 등은 채권·채무자 정보, 발생일자,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



홍길동은 은행에서 대출 후 후배에게 빌려준 0억원에 대해 은행 금융채무는 신고하였으나, 그에 따른 사인 간 채권 총 0억원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'징계 의결요청' 됨

## 사례 7. 건물임대채무 누락

-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(토지, 건물)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 누락

### 해결방법

- 총괄표 상 채무 항목에서 건물임대채무를 선택하여 임대보증금을 신고  
(※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채무인 점을 명심)

채무자	본인-홍길동 <small>※ 채무자별로 채무 집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, 반드시 건물로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십시오.</small>
채무종류	<b>건물임대채무</b>
★ 채무액	40,000 (천원) [사천만원]



홍길동은 타인에게 전세를 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(건물임대채무) 0억원을 누락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**‘과태료 부과’** 조치됨

## 사례 8. 전체 재산을 “변동없음”으로 신고

- 실제 재산이 변동했음에도 모든 재산을 이전에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신고

※전체 재산을 이전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심사 결과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



홍길동은 예금누락 등 〇천만원을 잘못 신고하여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‘경고 및 시정조치’ 대상이었으나, 전체 재산을 ‘변동없음’으로 신고하여 가중 처분되어 ‘징계 의결요청’ 됨

### 여기서 잠깐

☞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누락, 과다 등 재산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하고 있음

1

경고 및  
시정조치

2

과태료  
부과

3

일간신문 광고란을  
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

4

해임 또는  
징계 의결요청

##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·심사 관련 문의처

- ▶ **공직윤리(PETI)시스템 접속 및 시스템 종합 문의 : 서비스데스크(1522-4273)**
- ▶ 재산등록·공개 문의 :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(재산심사과, 044-201-8482, 8464)
- ▶ 고지거부 문의 :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(재산심사과, 044-201-8484)
- ▶ 재산심사 문의 :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(재산심사과, 044-201-8465, 8466)
- ▶ 주식백지신탁 문의 : 인사혁신처(윤리정책과, 044-201-8457)
- ▶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: 소속 기관 정보담당부서
- ▶ 기타 사용문의 및 질의 : 공직윤리시스템([www.peti.go.kr](http://www.peti.go.kr)) 게시판



#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



인사혁신처



[www.peti.go.kr](http://www.peti.go.kr)(공직윤리시스템) / [www.mpm.go.kr](http://www.mpm.go.kr)(인사혁신처)

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!

##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

주요 실수사례



인사혁신처